

영주시 공고 제2023 - 1177호

「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8일

영 주 시 장



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개정(안 제3조)

- 존속기한 : 2028년 12월 31일(5년)

나. 인용조문 변경(안 제7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8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복지정책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복지정책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11

E-mail : narugasi@korea.kr, FAX : (054)639-6299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	연락처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